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9
----------	-----

제출년월일 2001. 7. 5.
제출자 파주시장

☐ 제안이유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전통사찰의 주변 및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숙박시설이 입지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는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서 정하는 숙박시설을 준농림지역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전통사찰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에는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함.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제4조제1항 별표중 제5호의 규정”을 “제4조제1항 별표중 제6호”로 한다.

별표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란 다음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전통사찰주변지역 (식품접객업 제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전통 사찰주변지역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이격된 지역
---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과 ☎ 940-4701
입안자	도시과장	우범찬
	도시계획담당	정원모
	담당자	이상완

신 ·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제7조(기능)위원회는 숙박업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제4조제1항 별표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정서 및 주변여건상 설치허용여부 2. 생략		제7조(기능)위원회는 숙박업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제4조제1항 별표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정서 및 주변여건상 설치허용여부 2. <현행과 같음>		문화재, 전통사찰보호구역 등 주변지역에 대한 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허용지역의 세분화 및 명확성을 기함.
【별표】		【별표】		
구분	허용지역	구분	허용지역	
1.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4.862km)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격된 지역	1. 상수원보호구역	<현행과 같음>	
2. 도로주변지역(건축연면적 120㎡ 미만의 식품접객업 제외)	· 고속도로, 철도의 경계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여 이격된 지역 · 국도,지방도,군도(시도)의 경계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하여 이격된 지역	2. 도로주변지역(건축연면적 120㎡ 미만의 식품접객업 제외)	<현행과 같음>	
3. 하천주변지역	· 국가 및 지방1·2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를 초과하여 이격된 지역	3. 하천주변지역	<현행과 같음>	
4. 저수지주변집수구역	· 유효저수량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여 이격된 집수구역	4. 저수지주변집수구역	<현행과 같음>	
<신설>		5.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관광지,전통사찰주변지역(식품접객업 제외)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관광지,전통사찰주변지역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이격된 지역	
5. 주민정서 및 주변여건 판단지역	· 환경오염이나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미풍양속등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6. 주민정서 및 주변여건 판단지역	<현행과 같음>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 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전통사찰의 주변 및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숙박시설이 입지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는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서 정하는 숙박시설을 준 농림지역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전통사찰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는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 함

□ 검토내용

- 동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호구역 등 주변지역에 대한 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허용지역의 세분화 및 명확성을 기하고자 한 개정 조례안으로
- 별표 5항에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전통사찰 주변지역 경계로부터 1km를 초과하여 이격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문화재 보호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서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하고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m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과도한 규제 사항으로 사료됨
-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시·군에 대해 1km 범위로 제한토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시·군(5개시군)에서는 일반 숙박시설에 대해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11개 시·군이 1km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실정임